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806 호 2013. 3. 25(월)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6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고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43호[도로명주소 고시] 1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44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4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46호[하천(소하천)점용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17

공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282호[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8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2013. 3. 25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원·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⑩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설명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기본지침 수립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동 지역공동체 활성

화 사업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천받은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내표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 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위원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5조(회의개최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② 조정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또 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⑤ 회장, 부회장, 회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장, 보궐회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 ⑦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 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장 보칙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및 지역위원회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 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 및 예산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제1조~제6조)
- 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제7조~제18조)
- 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제19조~제23조)
- 라.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4조~제25조)
- 마.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제26조~제28조)
- 바. 재정 및 실무지원 등(제29조~제3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4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3.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동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협포동 362-1와 8필지	울산광역시 북구 협포로 707(협포동)	2013-03-25	협포형개형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245-6	울산광역시 북구 분통골길 31(전곡동)	2013-03-25	기존 지명인 분통골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16-2	울산광역시 북구 신업로 1189(창평동)	2013-03-25	울신의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6-18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14	울산광역시 북구 청전2길 8(양정동)	2013-03-25	북쪽과 서해지방의 선선들이 선단을 치어 양곡과 소금을 배매하던 곳으로 이 때부터 치전이라 불리었고 높은곳에 있는 나리마을이라는뜻으로 옛지명을 그대로 살려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령촌자구 34B 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20길 7(진정동)	2013-03-2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동 285-3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8-5(진정동)	2013-03-25	진정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1-23	
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5-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66(매곡동)	2013-03-25	매곡동의 지명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령촌자구 1208 13-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65(명촌동)	2013-03-2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9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1460-1	울산광역시 북구 회동14길 5-6(회봉동)	2013-03-25	회동은 회동의 옛지명이며 신세가 경검이 들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동 284-7, 284-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6-20(진정동)	2013-03-25	진정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1-23	
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동 284-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6-16(진정동)	2013-03-25	진정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1-23	
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1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2-18(진장동)	2013-03-25	진정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1-23	
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령촌자구 96B 11-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54-1(명촌동)	2013-03-2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07-3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2길 54-16(산하동)	2013-03-25	기존 자연마을인 산음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5	울산광역시 북구 협포동 292-10	울산광역시 북구 세장터9길 5-3(협포동)	2013-03-25	신전일대가 삼포개방 당시 새장터(소금파는장)로 사용하여 새장터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44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신천동 220-4, 220-8	매곡로 27	매곡로 25	2012. 3. 25.	중복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3.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4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6길 5-5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3.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표지| 고시| 조서

번호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6길 5-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89-1	2013-03-25	멸설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2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298	2013-03-25	멸설	
3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길 98-2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산15-8	2013-03-25	멸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46호

하천(소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소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14번길 38													
점용위치	화봉동 1183-3번지외 24필지	하 천 명	동천, 명촌천, 연암천, 상방천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 송수관 : D700, L=2,888m ○ 배수관 : D500, L=2,480m	점용면적 (m ²)	구 분 지방하천 소하천	일시 1,534.5 m ² 250.1 m ² - 12 m ²										
점용기간		○ 일 시	2013. 3. 22. ~ 2013. 11. 31.											
		○ 영 구	2013. 3. 22.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연암배수지계통 송수관 및 효문 동일원 배수관 매설공사	하천공사 목적	송수관 빛 배수관 설치공사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2013. 3. 22. ~ 2013. 11. 31.											
공사위치	화봉동 1183-3번지외 24필지													
토지 소재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소재지</th> <th>지 빙</th> <th>지 목</th> <th>취입면적(m²)</th> <th>소유자</th> </tr> </thead> <tbody> <tr> <td>구,군 동,리 북구 화봉동</td> <td>1183-3번지 외 24필지</td> <td>제방동</td> <td>하천구역 1,784.6</td> <td>소하천구역 12</td> </tr> </tbody> </table>				소재지	지 빙	지 목	취입면적(m ²)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화봉동	1183-3번지 외 24필지	제방동	하천구역 1,784.6	소하천구역 12
소재지	지 빙	지 목	취입면적(m ²)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화봉동	1183-3번지 외 24필지	제방동	하천구역 1,784.6	소하천구역 1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 282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 규모		보육 정원	비고	
		대지	건물			
빛솔어린이집	신천로 60(매곡동)	매곡휴민시아 단지내	아파트	134.053m ²	30	시간연장형

2. 위탁운영기간 : 2013. 7. 5 ~ 2016. 7. 4(3년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가.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등

4. 위탁운영 조건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 ※ 위탁운영체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취약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신청서류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3. 3. 25(월) ~ 2013. 4. 9(화)(16일간)
 - 나. 접수기간 : 2013. 4. 10(수) ~ 2013. 4. 17(목)(8일간)
-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

다. 설명회 개최

○ 개최 일 : 2013. 4. 1(월) 14:00,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단체 및 법인(개인)이 짐

라.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울산광역시북구청 4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가.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다.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라.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마.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바.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사.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아.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자. 어린이집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및 단체)

차.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개인)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체자로 제본(상철)하

여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7.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재정능력(5)

8.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가. 결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에 의함

나. 통 지 : 개별통지

9.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울산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
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

며 질의(10분)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원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기재된 원장)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
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보육담당) 052-241-7681 FAX 052-241-7669】

[붙임]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시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시급 및 빈세 능력에 관한 서류(개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당공부원 획수사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